

36. 파나마 (Panama)

◎ 주요 변동사항

구 분	2017	2019	비 고
보험료율(가입자/사용자)	9.25% / 4.25%	9.25% / 4.25%	-
연금수급 개시 연령	남 62세, 여 57세	남 62세, 여 57세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240월	240월	-
노령연금 지급률(240월 기준)	평균소득의 60%	평균소득의 60%	-
일시금	사회보험(가입기간 6월당 노령연금 1월분) 개인계좌(적립금액)	사회보험(가입기간 6월당 노령연금 1월분) 개인계좌(적립금액)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41년(사회보험기금), 2009년(사회부조)
- **현행법** : 2005년(사회보험 및 개인계좌), 2010년(비기여연금)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의무개인계좌, 사회부조

3 적용대상

○ 사회보험(단일)

• 당연적용

- 2006년 1월 1일에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35세 이상인 공공/민간부문 근로자 및 자영자
-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35세 미만이거나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시작한 공공/민간부문 근로자로 사회보험과 의무개인계좌 혼합제도에 참여할 것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
-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근로를 시작하고 혼합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 공공/민간부문 근로자

○ 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혼합)

- 당연적용
 - 2006년 1월 1일에 35세 이하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07년 12월 31일 전에 혼합제도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공공/민간부문 근로자
 -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근로를 시작한 공공/민간부문 근로자로 사회보험과 의무개인계좌 혼합제도에 참여할 것을 선택한 자
 - 2007년 12월 31일 후에 일을 시작한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
- 적용제외 : 자영자
- 임의적용 : 파나마에서 근로하는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당연적용 되지 않는 자

○ 의무개인계좌(단일)

- 당연적용 : 2007년 1월 1일에 35세 이하로 연간 소득이 9,600 balboas 초과인 자영자

○ 사회부조 : 취약 계층인 파나마 시민

4 **재원조달**

○ 가입자

- 사회보험(단일) : 월 소득의 9.25%(매년 13번째 월급에 대해서는 7.25%)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
- 사회보험 + 의무개인계좌(혼합)
 - 월 500 balboas의 소득까지는 사회보험으로 9.25%(매년 13번째 월급에 대해서는 7.25%)를, 월 500 balboas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의무개인계좌로 9.25%(매년 13번째 월급에 대해서는 7.25%)의 보험료를 납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
 - 가입자와 사용자의 의무개인계좌 보험료 합계 중, 10%는 개인계좌에, 2.5%는 연대 기여에, 0.93%는 단체노령보험에 0.07%는 단체장애보험에 할당됨
- 의무개인계좌(단일) : 의무개인계좌만 가입하는 근로자는 없음
- 사회부조 : 없음

○ 자영자

- 사회보험(단일) : 월 신고 소득의 13.5%
- 사회보험과 의무개인계좌 혼합 : 자영자는 비적용
- 의무개인계좌 : 연 소득 52%에 대해 13.5%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
 - 자영자의 보험료 중, 10%는 개인계좌에, 2.5%는 연대기여에, 0.93%는 단체노령보험에 0.07%는 단체장애보험에 할당됨

○ 사용자

- 사회보험(단일) : 월 소득의 4.25%(매년 13번째 월급에 대해서는 10.75%)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소득 없음
- 사회보험 + 개인계좌(혼합)
 - 월 500 balboas의 소득까지는 사회보험으로 9.25%(매년 13번째 월급에 대해서는 10.75%)를, 월 500 balboas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의무개인계좌로 9.25%(매년 13번째 월급에 대해서는 10.75%)의 보험료를 납부
 - 가입자와 사용자의 의무개인계좌 보험료 합계 중, 10%는 개인계좌에, 2.5%는 연대 기여에, 0.93%는 단체노령보험에 0.07%는 단체장애보험에 할당됨
- 의무개인계좌(단일) : 비적용
- 사회부조 : 없음

○ 정부

- 사회보험(단일) : 필요한 만큼 보조금 지원
- 사회보험 + 의무개인계좌(혼합) : 모든 가입자 소득의 0.8%, 목적세를 통해 행정 수수료 일부 지원, 연 20.5백만 balboas의 보조금
 -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현금질병급여 및 출산급여의 행정비용을 지원함
- 의무개인계좌(단일) : 비적용
- 사회부조 : 총 비용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 240월 이상인 남자 62세, 여자 57세 도달자
 - 다만, 계절적 농업이나 건설근로자의 경우 120월 이상 ; 자영자의 경우 최소가입 기간 요건 없음
 - 부분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239월인 남 62세, 여 57세 도달자
 - 조기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이 204월 이상인 남 60세, 여 55세 도달자
 - 조기부분연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239월인 남 60세, 여 55세 도달자
 - 연기연금(사회보험) : 연기 가능, 연령 제한 없음
 - 부양가족 수당 : 수급 가능 피부양자가 있는 남 62세, 여 57세 도달자
 - 수급 가능 피부양자 : 여성 배우자, 가입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임신 또는 5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여성 배우자, 장애가 있는 남성 배우자, 14세 미만 자녀(학생은 18세, 장애는 연령 제한 없음)
 - 사회보험 노령연금 해외지급 가능
-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
 - 보험료 납부기간 240월 이상인 남자 62세, 여자 57세 도달자
 - 다만, 계절적 농업이나 건설근로자의 경우 120월 이상 ; 자영자의 경우 최소가입

기간 요건 없음

- 보충급여 : 사회보험과 의무개인계좌 혼합제도에 가입하기 전에 12개월 동안 500 balboas를 초과하는 월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2006 ~ 2007년 사이에 자발적으로 사회보험과 의무개인계좌 혼합제도에 가입한 자
- 의무개인계좌 노령연금 해외지급 가능
- 노령일시금(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남 62세, 여 57세 도달자
- 노령사회연금(사회부조, 자산조사) : 65세, 빈곤층, 다른 연금 수급자격 없는 경우 지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정상퇴직연령 미만으로 근로능력을 66.7% 이상을 상실하고 아래 조건 중 하나 충족
 - ① 30세 이하 : 최종 3년 동안 18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 3년 이상
 - ② 31세~40세 : 최종 4년 동안 2년 이상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 4년 이상
 - ③ 41세~퇴직연령 미만 : 최종 5년 동안 30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 ④ 연령불문 : 보험료 납부기간 20년 이상
 - 장애정도는 의학자격위원회(Medical Qualification Commission)에서 측정하며, 가입자 또는 사회보험기금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재평가할 수 있음
 - 부양가족 수당 : 여성 배우자, 가입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임신 또는 5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여성 배우자, 장애가 있는 남성 배우자, 14세 미만 자녀(학생은 18세, 장애는 연령 제한 없음)
 - 장애연금 해외지급 가능
- 장애일시금(사회보험 및 의무개인계좌)
 - 정상퇴직연령 미만이고, 근로능력을 66.7% 이상을 상실하고, 장애 발생 전 12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적어도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하였으나,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사망 전 최종 3년 동안 18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지급
 - 수급가능 유족 : 배우자, 사망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임신 또는 5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여성배우자, 18세(장애는 연령제한 없음) 미만 자녀.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자의 피부양 모친 또는 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피부양 부친에게 지급
 - 사회보험 유족연금 해외지급 가능
- 유족연금(의무개인계좌)
 - 사망자가 계좌잔액이 있어야 함
 - 수급가능 유족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장애는 연령제한 없음).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부모, 수급 자격이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지정 상속자에게 지급
 - 개인계좌 유족연금은 해외지급 가능

- 유족일시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사회보험 노령/장애연금을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지급
- 장제비(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 당시 사회보험 노령/장애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또는 사망 직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노령급여

- 노령연금(사회보험)
 - 가입자의 최고소득 10년간 월 평균소득 60%에 20년을 초과하는 납부기간 매 12개월마다 월 평균소득의 1.25%씩 추가금액 지급
 - 계절적 농민 및 건설근로자
 - 가입자의 최고소득 10년간 월 평균소득 60%에 총 보험료 납부월수를 180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지급
 - 급여 산정을 위한 연 최고소득은 3,500 balboas임
 - 최저 노령연금 월액은 255 balboas
 - 계절적 농민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최저 노령연금 월액 기준은 없음
 - 사회보험의 월 최대노령연금은 1,500 balboas
 - 2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최종 1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에서 월평균소득이 2,000 balboas 이상인 경우에는 2,000 balboas
 - 30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최고 소득기간 20년 동안 월평균소득이 2,500 balboas 이상인 경우에는 2,500 balboas
 - 혼합제도에서 사회보험 부분의 월 최대연금은 500 balboas
 - 부분연금 : 가입자 최고소득 10년간 평균소득의 60%에 총 보험료 납부월수를 240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지급
 - 조기연금 : 정상 퇴직연령보다 1년 일찍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 8.72% 감액 또는 정상 퇴직연령보다 2년 일찍 청구하는 경우 노령연금 16.58% 감액
 - 조기부분연금 : 정상 퇴직연령보다 1년 일찍 청구하는 경우 부분연금 8.72% 감액 또는 정상 퇴직연령보다 2년 일찍 청구하는 경우 부분연금 16.58% 감액
 - 연기연금 : 정상 퇴직연령 이후 매 1년 마다, 소득이 가장 높았던 10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2%씩 가산
 - 부양가족 수당 : 수급 가능 배우자에 대해서는 월 20 balboas, 수급 가능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10 balboas
 - 월 최대 부양가족 수당은 100 balboas
 - 급여 조정 : 급여는 경제 상황에 기초하여 수시로 조정
- 노령연금(의무개인계좌)
 - 가입자의 개인계좌 적립액을 기대여명과 연계된 보험계리적 가치로 나눈 금액을 프로그램 인출로 지급
 - 수급자가 예측 기대여명 이상 생존하여 계좌금액이 고갈된 경우 공동 보험으로 보충
 - 보충급여 : 혼합(사회보험+의무개인계좌)제도로 전환하기 전 500 balboas를 초과하는

월소득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지급

- 노령일시금(사회보험) : 납부기간 매 6개월마다 노령연금 1개월분씩 산정한 일시금 지급
- 노령일시금(개인계좌) : 개인계좌의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노령사회연금(사회부조, 자산조사) : 월 120 balboas 지급

○ 장애급여

- 장애연금(사회보험)
 - 가입자의 최고소득 10년간(10년 미만일 경우 총 납부기간) 월 평균소득 60%에 20년을 초과하는 납부기간 매 12개월마다 월 평균소득의 1.25%씩 추가한 금액을 2년간 지급 (2년을 초과하여 연금이 연장되는 경우 평생 지급)
 - 월 최저장애연금은 255 balboas
 - 사회보험의 월 최대장애연금은 1,500 balboas
 - 2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최종 15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에서 월평균소득이 2,000 balboas 이상인 경우에는 2,000 balboas
 - 30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고, 최고 소득기간 20년 동안 월평균소득이 2,500 balboas 이상인 경우에는 2,500 balboas
 - 혼합제도 하에서 사회보험의 최대 장애연금은 월 500 balboas
 - 부양가족 수당 : 수급 가능 배우자에 대해서는 월 20 balboas, 수급 가능 자녀에 대해서는 각각 10 balboas
 - 월 최대 부양가족 수당은 100 balboas
 - 급여 조정 : 급여는 경제 상황에 기초하여 수시로 조정
- 장애연금(의무개인계좌)
 - 가입자의 개인계좌 적립액을 기대여명과 연계된 보험계리적 가치로 나눈 금액을 프로그램 인출로 지급
 -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 장애연금 합산액이 가입자가 (구)사회보험제도에 따라 수급할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을 경우, 공동 보험을 통해 차액 지급
- 장애일시금(사회보험) : 납부기간 6개월마다 노령연금 1개월분씩 산정한 일시금 지급
- 장애일시금(의무개인계좌) : 개인계좌의 적립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유족급여

- 유족연금(사회보험)
 - 배우자연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
 - 고아연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0%를 각 고아에게 지급; 완전고아인 경우 50% 지급
 - 기타 피부양자연금 :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30%를 수급 자격이 있는 한 명의 부모에게 지급
 - 월 최저 유족연금액은 120 balboas
 - 모든 유족연금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조정 : 급여는 경제 상황에 기초하여 수시로 조정
- 유족연금(의무개인계좌) : 개인계좌 총 적립액을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에게 프로그램 인출로 지급
- 유족일시금(사회보험) : 보험료 납부기간 매 6개월 마다,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개월분을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장제비(사회보험) : 장례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300 balboas의 일시금 지급

7

관리운영기관

○ 사회보험기금(Social Insurance Fund)

- www.css.gob.pa
- 자문위원회와 함께 사무총장이 운영
- 사회보험 및 개인계좌제도의 감독, 운영, 보험료 징수

○ 사회개발부(Ministry for Social Development)

- www.mides.gob.pa
- 비기여연금 운영

<2019년 ISSA 자료>